

## 서언

정부는 최근 수년간 침체에 빠져있는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고 건설산업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이러한 개선활동이 있을 때마다 건설업계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건설업 면허체계'가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현재 건설회사의 설립이 면허에서 등록체계로 바뀌어 회사설립은 예전보다 쉬어졌지만 오히려 소규모 회사들의 난립으로 건설품질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회사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건설물의 품질은 물론, 나아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점진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건설선진국의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그 장점을 도입한다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건설업 면허체계를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들어 간략히 소개하고 국내 건설산업에 반영될 수 있는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미국의 법체계가 연방법과 주정부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모두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회사이든 설계회사이든 또, 그것이 개인회사이든 주식회사이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그 회사가 본거지를 둔 주의 제도와 법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것은 결국 미국 내 건설관련 업체의 면허 및 등록체계 역시 각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건설관련 업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령(Code)의 구성이나 주무기관은 각 주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골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부간의 협정에 의해 상호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전반적으로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건설업 면허체계'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는 이 지역만의 특성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건설업 면허체계'와 제도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활동 중인 건설업 면허가 약 278,000여 건에 이르고 있고 매년 20,000건 정도의 신규 면허발급 신청이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건설업은 이 주의 산업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건설업 면허 발급에 관한 일반사항

캘리포니아주에서 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 개인 또는 업체가 수주해 수행하는 공사의 총 계약금액이 인건비나 자재비를 모두 포함해 500달러가 넘지 않는다면, 또 이와 같은 공사에 한해 본인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광고하고 계약자(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인지시켰다면 해당 공사에 대한 면허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특히 건설업자가 어떠한 형태이든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각종 면허와 관련된 법·제도는 각 주정부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업 면허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은 주로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Division 3.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Chapter 9. Contractors'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는 타 주에서 발급된 건설업 면허를 인정

#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통해본 미국의 건설업 면허 체계

김 예상, 성균관대학교  
건축·조경 및 토목공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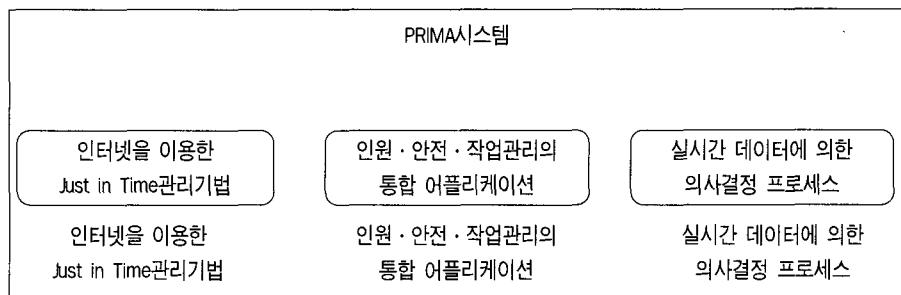
하지 않으며, 다만, 면허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타 주에서의 경력 또는 면허시험은 해당 주와의 상호협정(reciprocal agreement)에 의해 각각 인정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는 캘리포니아 주에 상주할 필요는 없지만, 타 주에 상주하는 자 또는 타 주의 사업자가 이 주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또는 해당 공사가 면허를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캘리포니아주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건설업 면허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는 'The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CSLB)'가 담당하고 있는데, CSLB는 건설업 면허 발급에 대한 규정을 크게 신규면허 발급과 재발급, 그리고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면허 발급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세부적인 절차와 조건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신규면허 발급에 한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기로 한다.

## 건설업 면허의 유형

건설업 면허는 개인(individual), 파트너십(partnerships),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법인 또는 주식회사(corporations) 등의 사업체에게 발급되고 따라서 발급대상자에 따라 개인면허, 파트너십면허, 조인트 벤처 면허, 법인 면허로 구분할 수 있다. 단, 법인의 경우 면허발급에 앞서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에게 사업체 등록을 거쳐야 하며,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또, CSLB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3개 등급 또는 유형의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각 등급의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개인 또는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하의 등급 또는



<그림1> PRIMA System의 구성

유형의 면허를 복수로 소지할 수 있다.  
(그림 1)

1. A 등급(Class "A") – 일반 엔지니어링 건설업자(General Engineering Contractor). 주요 사업은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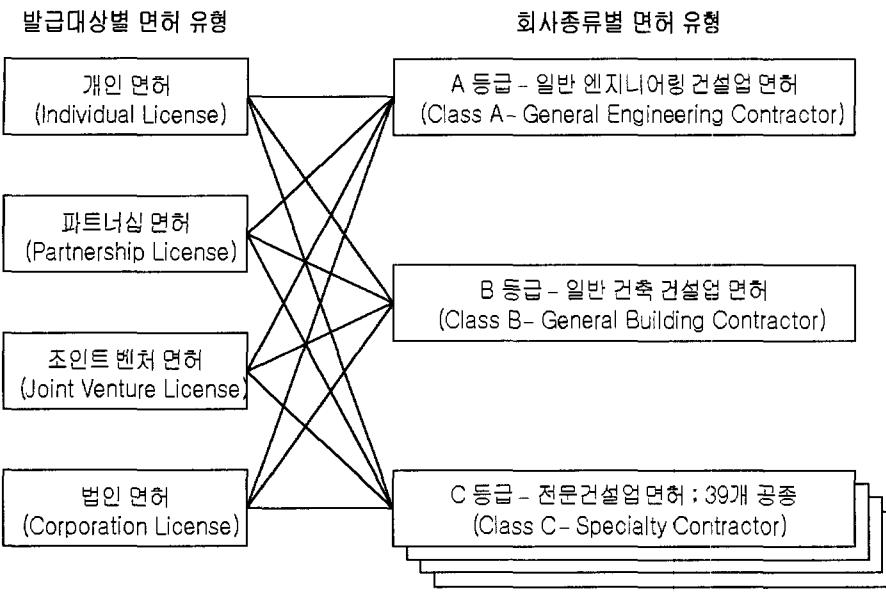
2. B 등급(Class "B") – 일반 건축 건설업자(General Building Contractor). 주요 사업은 기 완성된 구조물, 시공중인 구조물, 시공 예정인 구조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구조물의 공사에는 적어도 2개 공종 이상의 공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건축 건설업자가 해당 공종에 대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그러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를 하도급자로 고용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축 건설업자도 단일 공종의 프로젝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3. C 등급(Class "C") – 전문건설업자(Specialty Contractor). 주요 사업은 전문적인 작업과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건설업 면허는 다음의 39개 공종으로 나뉘어진다.

- 1) 보일러, 온수난방 및 스팀 설비(Boiler, Hot Water Heating and Steam Fitting)
- 2) 건물 이전 및 철거 (Building Moving and Demolition )
- 3) 목공, 캐비넷 및 목공 제품

(Carpentry, Cabinet and Millwork)

- 4) 콘크리트 (Concrete)
- 5) 드라이월 (Drywall)
- 6) 토공 및 포장 (Earthwork and Paving)
- 7) 전기 일반 (Electrical, General)
- 8) 전기 신호 (Electrical Signs)
- 9) 엘리베이터 설치 (Elevator Installation)
- 10) 펜스설치 (Fencing)
- 11) 방화 (Fire Protection)
- 12) 바닥마감 (Flooring and Floor Covering)
- 13) 공장제작 주택 (General Manufactured Housing)
- 14) 유리 (Glazing)
- 15) 단열 및 음향 (Insulation and Acoustical)
- 16) 조경 (Landscaping)
- 17) 래스 및 플라스터 (Lathing and Plastering)
- 18) 제한적 특수공사 (Limited Specialty)
- 19) 시검 및 보안 설비 (Lock and Security Equipment)
- 20) 로우 볼티지 시스템 (Low Voltage Systems)
- 21) 조적 (Masonry)
- 22) 금속 장식 (Ornamental Metals)
- 23) 주차시설 및 고속도로 개량 (Parking and Highway Improvement)
- 24) 도장 및 치장 (Painting and Decorating)



- 25) 파이프라인 (Pipeline)
- 26) 배관 (Plumbing)
- 27) 냉동시설 (Refrigeration)
- 28) 지붕 (Roofing)
- 29) 위생 시스템 (Sanitation System)
- 30) 시트 메탈 (Sheet Metal)
- 31) 태양열 설비 (Solar)
- 32) 철근 (Steel, Reinforcing)
- 33) 철골 (Steel, Structural)
- 34) 수영장 (Swimming Pool)
- 35) 타일 (Tile; Ceramic & Mosaic)
- 36) 난방, 환기 및 냉방 (Warm-Air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 37) 정화 (Water Conditioning)
- 38) 용접 (Welding)
- 39) 우물 시추 (Well-Drilling; Water)

## 건설업 면허 발급조건 및 면허시험

건설업 면허의 발급대상은 그 유형이 개인면허라 하여도 개인이 아니라 그가 운영하게 되는 ‘사업체’이며, 면허 발급

에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면허발급 대상자(Qualifying Individual 또는 Qualifier)’의 경력조건과 면허시험 (Licensing Examination) 합격여부이다. 이때 ‘면허발급 대상자’란 업체의 소유주와는 다른 개념으로, 해당 건설분야의 경력과 과거 타 건설업 면허에의 등재 여부, 면허시험 합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업체의 운영과 수주한 건설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즉, 건설업 면허 신청시 사업체의 소유주가 건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이 없더라도 ‘책임 경영 직원 (Responsible Managing Employee; RME)’을 고용해 ‘면허발급 대상자’로 등재함으로써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체 면허(Individual License)의 경우 ‘면허발급 대상자’는 사업체 소유주가 건설업 경력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할 때는 그 자신 또는 그가 고용한 RME가 될 수 있으며, 파트너십 면허(Partnership License)의 경우에는 파트너 중 한사람 또는 그들이 고용한

RME, 법인 면허(Corporation License)에서는 CSLB의 리스트에 올라있는 자로서 ‘책임 경영 임원(Responsible Managing Officer; RMO) 또는 RME’가 된다. 단, ‘면허발급 대상자’가 RME일 때에는 그가 적어도 주당 32시간 이상 또는 주당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어야 한다. CSLB는 기 발급된 모든 면허에 등재되어 있는 ‘경력보유자’의 리스트를 관리해오고 있다.

건설업 면허 신청이 접수되면 CSLB는 면허 신청자 또는 위의 규정을 만족하는 ‘면허발급 대상자’의 경력을 심사한 뒤 면허시험 응시자격의 적합성 여부 또는 시험 문제 여부를 판단한다. 시험 응시자격은 면허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적어도 4년간 지원하는 분야에서 기능공(j journeyman), 십장( foreman ), 감독(supervising employee), 건설업자 (contractor), 또는 오너 빌더(owner-builder)로서 경력을 소지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주어지며, 각 경력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기능공(J Journeyman) ; 견습훈련 프로그램(apprenticeship program)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감독(supervision)없이 해당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2. 십장 또는 감독( foreman or supervisor ) ; 기능공으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로서 공사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자
3. 건설업자(contractor) ; 현장 감독을 포함해 건설사업과 관련된 제반 활동들을 관리·운영하는 자
4. 오너 빌더(owner-builder) ; 기능공

1) 이 ‘면허시험’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일종의 ‘자격시험’으로 건축사나 기술사와 같이 전문직 종사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개인 전문면허(professional license)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으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

이때 ‘면허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력증명서’라 할 수 있는 ‘Certificate in Support of Experience Qualifications’를 첨부해 경력을 확인 받아야 하고, 이 증명서는 건축주, 고용자, 동료 직원, 타 기능공, 도급자, 유니온 대표, 빌딩 인스펙터, 건축사, 기술사 등을 포함해 신청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4년의 실무 경력 중 일부분은 해당 영역과 관련된 기술훈련(technical training), 견습훈련 또는 관련분야의 정규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실무경력의 대체 기간은 훈련 및 교육내용, 학위 등에 따라 1 1/2년에서 3년까지이며 이 경우 훈련이수 증명서 또는 성적표 등과 같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라 해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면허발급 대상자’의 경력이 최종 확인, 인정되고,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자는 면허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때 면제 사유란, 신청인 또는 ‘면허발급 대상자’의 이름이 이미 타 사업체에 발급된 면허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난 7년간 5년 이상 직계가 운영하는 사업(family business)에 참여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지난 5년 내에 이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시험은 ‘Law and Business Examination’과 ‘Trade Examination’

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신청인은 이 두 과목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약 100 문항의 객관식 문제로 구성된 ‘Law and Business Examination’은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시험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두번째 과목인 ‘Trade Examination’은 신청인이 면허를 신청하는 전문영역에 대해 기술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다. 이 중 ‘Law and Business Examination’은 다음의 10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 1) 프로젝트 및 작업 관리 (Project/Job Management; 전체 문항의 약 20 %)
- 2) 면허 (Licensing; 약 15 %)
- 3) 부기 (Bookkeeping; 약 15 %)
- 4) 입찰절차 (Bid Procedures; 약 13 %)
- 5) 안전 (Safety; 약 12 %)
- 6) 계약 (Contracts; 약 10 %)
- 7) 선취득권 및 분쟁해결 (Liens and Dispute Resolution; 약 5 %)
- 8) 종업원 이슈 (Employee Issues; 약 4 %)
- 9) 보험 (Insurance; 약 3 %)
- 10) 특수상황 (Special Circumstances; 약 3 %)

이 시험은 과목당 각각 약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정확한 시간과 합격기준은 문제의 구성에 따라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건설업 면허 신청 및 발급 절차

캘리포니아 주의 건설업 면허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청인은 먼저 ‘Application for

Original Contractor’s License’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CSLB에 25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체명 (Full Name of New Business)
- 2) 면허 신청 분야 (Classification Requested)
- 3) 사업체 주소 및 연락처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 4) 사업체 유형 (Business Operation – Sole Ownership, Partnership, Corporation)
- 5) ‘면허발급 대상자’의 이름 및 소유자 분 (Qualifier Name / Percentage(%)) Qualifier Owns of the New Business)
- 6) 사업체 주요구성원 (Individuals Listed on the License – 소유주, 파트너, RME, RMO 등. 법인사업체의 경우 반드시 사장, 비서, 회계를 포함)
- 7) 사업체 구성원의 법률적 적격여부 및 면허취소 또는 정지 경력 여부 등
- 8) ‘면허발급 대상자’의 권한 및 적격성
- 9) 자본금 \$ 2,500 보유 여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의 절차는 신청인(또는 ‘면허발급 대상자’)이 면허시험을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CSLB는 제출된 양식상의 경력을 검토하여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4~6주 내에 서면을 통하여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Notice to Appear for Examination), 신청인은 CSLB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반면, 시험이 면제되고 CSLB로부터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150달러의 면허발급비용(initial license fee)과 ‘면허

1) CSLB는 ‘면허발급 대상자’ 뿐만 아니라 면허에 등재되는 구성원들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성원 리스트에 등재된 경력은 추후 면허신청시 ‘면허발급 대상자’로서의 경력심사에 근거자료가 된다.

발급 대상자'로서의 시험면제 증빙서류 및 각종 재무상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새로 면허시험을 통과한 자 역시 제출서류는 동일하며 추가로 150달러의 면허발급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건설업 면허 신청자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정보 또는 증빙자료는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면허 신청자는 (조인트 벤처 면허는 예외) 2,500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별도의 증빙자료는 필요없음), 둘째, 7,500 달러 상당의 '건설업 보증보험(Contractor's Bond Insurance)' 증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같은 금액의 현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셋째, RME 또는 RMO에 대해서도 7,500 달러 상당의 '적격자 또는 책임 경영자에 대한 보증 보험(Bond of Qualifying Individual)' 증서를 제출하거나 현금 공탁을 하여야 하며, 넷째 '근로자 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RMO가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증은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업 면허는 2년간 유효하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2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발급 받은 후 실질적인 업체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상의 절차와 요건을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 The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CSLB)

캘리포니아 주의 CSLB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업 면허 발급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수행하고 있지만, 건설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활동 역시 이 기관의 중요한 임무이다. 이러한 기관의 성격은 그 역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CSLB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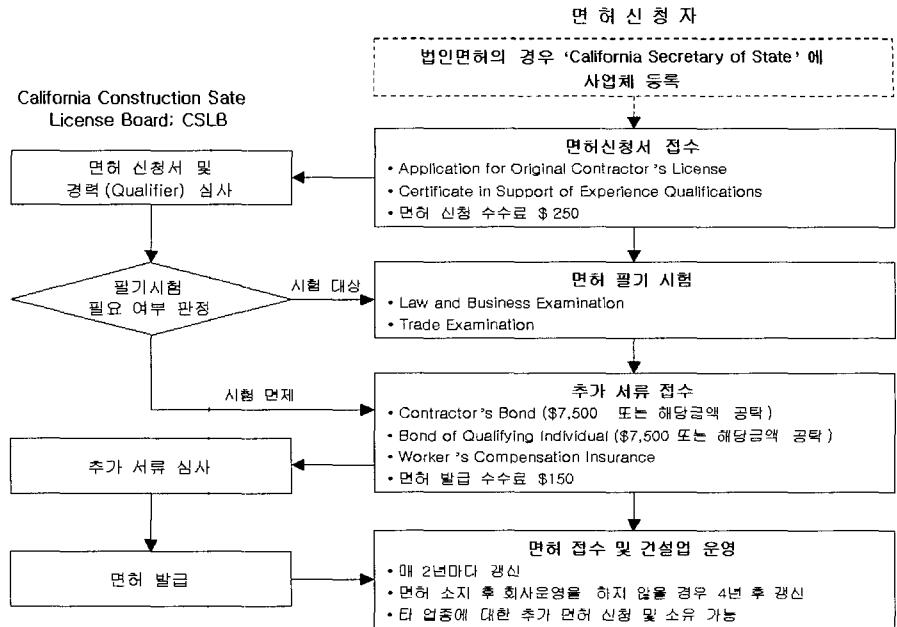


그림 2. 캘리포니아 주 건설업 면허 발급 절차 (신규면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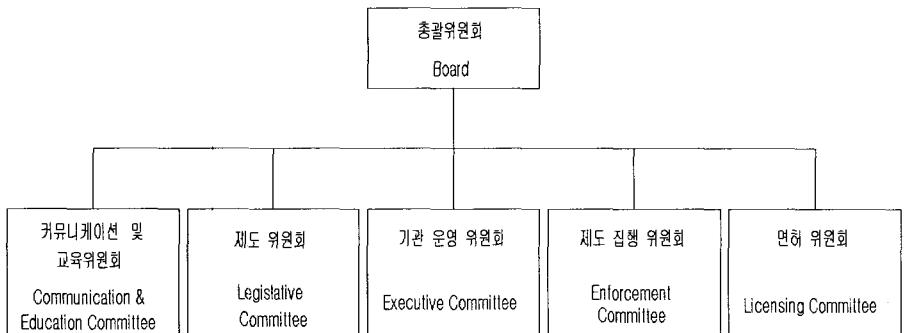


그림 3. CSLB의 조직 구성

1929년 'Department of Professional and Vocational Standards' 산하의 'Contractors License Bureau'로 설립되었다가 현재는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다. CSLB의 운영은 건설업자, 건축담당 공무원, 소비자, 노동관련기관 대표자 등 15인으로 구성된 총괄위원회(Board)를 정점으로 그림 3과 같이 5개의 위원회(Committee)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원 규모는 470여명, 2001년의 운영예산은 약 4,56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CSLB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설업 면허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공공의 안

전과 복지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다.

- 1) 건설업 면허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집행 (Enforcement) –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하는 무면허, 비전문적인 건설활동의 제재 및 방지
- 2) 건설업 면허의 발급 (License) – 면허발급을 통해 건설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반 확보
- 3) 건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 (Legislation & Policies)

- 면허 관련 법령, 제도, 정책, 절차 등을 수립함으로써 건설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와 건설업자간 분쟁 해결책을 제공

- 4)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Communication & Education) - 소비자가 건설 서비스 구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들에게는 기술적인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
- 5) 기관의 발전 (Organizational Development) - 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CSLB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

## 미국 건설업 면허체계가 주는 시사점

미국의 건설업 면허체계는 당국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사항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미국은 각 주마다 이에 대한 제도가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건설산업 환경과 문화, 관행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제도가 우리의 제도보다 무조건 혁신적이거나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오히려 회사의 설립 요건에서 보면, 국내에서 건설회사의 설립이 등록 사항인데 비해 미국의 경우 면허제로, 미국의 제도가 우리 제도보다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를 살펴본 결과 느낄 수 있는 것은, 회사 설립 요건이 면허에서 등록으로 간편화 또는 덜 엄격해졌다고 해서 관련 행정기관이 건설산업과 공공에 대한 책임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

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제도가 우리의 것보다는 한 수준 높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설물의 품질, 그리고 건설업자 책임수준의 향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건설업 면허체계는 해당 회사가 수행하는 건설활동의 품질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이라면 효율적인 절차에 의해 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건설업 면허제에서 볼 수 있는 '면허 신청자' 또는 '면허발급 대상자(Qualifying Individual)'에 대한 경력심사나 시험제도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사례에서 특징적인 사항 중 하나는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CSLB)'의 기능이다. 캘리포니아주는 건설업체 면허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이 부서에 일원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SLB는 공공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면허와 관련된 자체적인 분석과 계획, 그리고 제도 수립 활동을 수행해 가고 있다. 즉, 면허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사항들은 제도의 목적과 운영과 관련해 국내 건설산업과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부적인 절차나 요구사항, 그리고 시험제도와 같이 우리의 제도와 상이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본고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CSLB의 기능도 눈여겨볼 만 한다. 그

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들의 손에 의해 건설된 건설물들이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건설업 면허체계'가 이러한 개념을 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좋은 제도는 쉽고 간편한 제도이어야 하기보다 그 제도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Instruction for Completing Application for Original Contractor's License, Contractors License Board,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State of California
- Application for Original Contractor's License, Contractors License Board,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State of California
- CSLB Strategic Plan 2002, Contractors License Board,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State of California
- CSLB 2001 Accomplishments and Activities, Contractors License Board,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State of California
- Contractor's License Reference Site, <http://contractorslicense.org>
-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http://www.cslb.ca.gov>